제303회 임시회 2011.09.30.(금)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

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

<u>2011.09.30.(금)</u>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박상필 교육의원외 6인
- 나. 발의일자 : 2011년 09월 09일
- 다. 회부일자 : 2011년 09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11년 09월 21일

(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상필 교육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O 충청북도교육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책무성 강화
 - 평생교육수요자의 급증과 수요자의 학습욕구 다양화 등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·운영으로 실용적인 평생교육실시

-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과 지역문화 개발에
 노력하게 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함
- O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

나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 및 지원(안 제2조)
- 수요자 관점의 평생교육 교육과정 운영(안 제3조)
- O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을 위한 학교의 중심 역할 명시
 (안 제4조제1항)
- 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사항 명시(안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)
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(안 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: 김왕년)

- O 본 제정조례안은「평생교육법」제6조(교육과정 등), 제16조(경비 보조 및 지원), 제17조(지도 및 지원) 법령과 같은 법 제29조(학 교의 평생교육),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학교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.
- O 안 제1조에 "목적"을 정하고, 안 제2조에 "평생교육기관의 지도 및 지원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"를, 안 제3조에 "교육과정"을 정한 것은
 <표 1>과 같이 학교 내에서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정한 규정이라고 생각됨.

<표 1>

2011년 상반기 학교 평생교육 운영 현황

충청북도교육청

(단위:천원)

구 분	실 시 학교수	프로그램 개설 강 좌 수	참여 연인원	소요예산	비고
초등학교	226	313	115,196	302,558	
중 학 교	97	143	24,537	66,965	
고등학교	32	55	7,080	337,285	
특수학교	4	10	559	1,900	
합 계	359	521	147,372	708,708	

※자료 : 충청북도교육청(산업정보평생과)

- 안 제4조에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 교육 실시를 위하여 교실, 도서관, 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,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의무화 한 것은 평생교육 참여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O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교직원의 인건비,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, 교재
 · 교구 구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갖추는 적정한 제정이라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 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- 9. 첨부서류 :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교의 평생교육진흥과 평생교육기관 활성화를 위하 여「평생교육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도 및 지원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평생 교육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 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- 제3조(교육과정) 평생교육의 교육과정·방법·시간 등은 평생교육을 실시하 는 자가 정하되, 수요자 관점에서 개발·시행하도록 하며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**제4조(학교의 평생교육)** ①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학교를 중심 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
 위하여 교실·도서관·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.

③ 「평생교육법」(이하"법"이라 한다)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위탁 받아 실시하는 자는 학교시설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학교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④ 법에 따라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·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 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 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

1. 1인당 배상금액 8천만원 이상

2. 1사고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

⑥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,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
 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다.

제5조(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) ① 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직원 인건비

2. 저소득층인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

3. 실험·실습 교육지원경비

4. 교재·교구 구입비

5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업

②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
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하지 않았거 나, 제4조 제5항에서 정한 배상금액 미만으로 가입한 학교의 평생교육 실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배상 기준 금액 이 상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가입하여야 한다.

관계법령발췌

□ 평생교육법

- 제6조(교육과정 등) 평생교육의 교육과정·방법·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u>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</u> <u>정하되,</u>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.
-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 홍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 - 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 - 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 - 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
제17조(지도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- 제29조(학교의 평생교육) 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·시행하도록 하며,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·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자치단체 또
 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
 및 단체는 제외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 실·도서관·체육관,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<u>지방자치단체의 조례</u>

로 정한다.
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</u>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학교급식법

- 제9조(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. <개정 2007.10.17, 2010.7.23>
 - 1. <u>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규정에따른</u> <u>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,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의 규정에</u> <u>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</u>
 - 2.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 3.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
 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